

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

채권 최고액	일금 백만 원정 (₩ 1,000,000)
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(이하 "갑"이라 함.), 근저당권설정자(이하 "을"이라 함.), 채무자(이하 "병"이라 함.)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.

근저당자동차의 표시

자동차등록번호	차 명	년 식	차대번호
123가4567	K5	2010	KMGGH*****

제1조 [근저당권 설정] 을은 갑에 대해 상기금액을 채무의 최고액으로 하고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자동차구입으로 인한 채무(할부금융대출금, 외상채무금, 어음금, 수표금, 각서금 등)와 병이 부담할 제비용, 병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지연손해금 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병이 갑에게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및 그 부속물건에 순위 제 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. 위 한도내의 원금에 대한 이자 등 종속된 채무는 위 한도 초과시라도 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것으로 한다.

제2조 [근저당권의 효력범위] 이 근저당권의 효력은 현재 근저당 물건에 부속한 일체의 물품과 장래 수리 또는 개조 기타 사유로 부가 종속될 제 장치, 기계기구 등 일체의 부속물건에도 당연히 미치는 것으로 한다.

제3조 [변제방법 및 이자] 병은 제1조에서 정한 본 채무를 약정한 변제기일에 갑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, 채무연체시 채무액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조 [보험계약] 을은 본 저당물건에 갑이 지정한 보험회사와 갑이 지정한 종류와 금액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하며 이 보험계약에 가입한 권리는 이를 갑에게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.

제5조 [저당물건의 경매 및 회수] 병이 제1조에서 정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시 갑은 즉시 본 저당물을 경매하거나 그 절차상 갑이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6조 [제 절차의 이행과 비용] 갑이 본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록 및 기타 제절차를 요구할 때는 을과 병은 자기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하고 근저당 물건에 대해 을과 병이 부담한 비용을 갑이 대납하였을 때에는 을과 병은 대납금액을 즉시 갑에게 지급한다.

제7조 [저당물건의 보고 조사] 갑이 본저당물건의 실태조사 또는 통보를 청구할 때에는 병과 을은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 [합의관할]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 계약의 증거로 본 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 이를 확인함.

2020 년 1 월 1 일

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(갑)	성명(명칭) 홍길동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770000-1111111 (인)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
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(을)	성명(명칭) 김영희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770000-1111111 (인감날인)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
채 무 자 (병)	성명(명칭) 김영희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770000-1111111 (인감날인)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